

1

'19.1.1.부터 모든 어린이집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



추진배경

- 형식적 종일반 운영으로 실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 보육불편 초래
- 전체 어린이집 19:30까지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19. 1. 1. ~ '19. 12. 31.
- 이용대상 : 18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희망 영유아
 - 영아(0~2세) : 종일반 지원 자격 아동
 - 유아(3~5세) : 0~2세 종일반 자격기준에 준하되,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
- 운영대상 : 부산시 소재 전체 어린이집
- 이용방법
 - 맞벌이 등으로 18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재원 어린이집에 이용신청
 - 담임교사 배치 등을 위해 사전신청 협조

협조사항

- 읍·면·동주민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안내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자료제공 :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☎ 051-888-1575



추진배경

-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제고
-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19. 1. 1. ~ '19. 12. 31.
- 지원대상 :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만3~5세* 아동
 - * 정부미지원어린이집 : 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영아전담, 장애아전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
- 지원요건
 -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
 - 부산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이용
- 지원내용 : 만3~5세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
- 지원금액 : 만3세 월 73천원, 만4~5세 월 58천원
- 지원방법 :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(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)

협조사항

- 읍·면·동주민센터를 통한 차액보육료 지원 안내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3

슈퍼마켓(165㎡이상) 및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

◇ 2019.01.01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(165㎡이상)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알려 시민불편 예방

1회용품 관련 주요 개정사항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
 - 표준산업분류 ‘제과점업’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[유상판매 가능]
 - 표준산업분류 ‘슈퍼마켓’ (165㎡~3,000㎡)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[유·무상 제공금지]
 - ※ 165㎡미만 슈퍼마켓은 무상제공금지, 유상판매가능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[유·무상 제공금지]
 - ※ 속칭 속비닐(생선, 정육,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)은 사용가능

당부사항

- 165㎡(약50평)이상 슈퍼마켓에서 유·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제도정착 추진
- 종량제비닐봉투는 판매가 가능하여 구매물품 담는 용도로 사용 가능
- 개인별 장바구니를 사전에 휴대하여 1회용 비닐봉투 근절 동참
- 제과점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유상판매만 가능하니 사전 인지

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- 각종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

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관련 홍보포스터(홍보물)

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
**장바구니 사용에
동참해 주세요**



자원재활용법에 따라 **비닐봉투를 무상제공** 할 수 없습니다

참 고 2

슈퍼마켓(165㎡이상) 1회용 비닐봉투 관련 홍보포스터(홍보물)

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
장바구니 사용에
동참해 주세요



자원재활용법에 따라 **비닐봉투**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



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

◇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함

개 요

- 사업대상 : 배출가스 5등급* 경유차(도로용 건설기계 포함)
*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(<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>) 및 콜센터(1833-7435) 확인
☞ 배출가스 5등급 범위 : '07년 이전까지 제작된 경유차 포함
- 지원조건 : 부산시에 2년 연속 등록하고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, 저감장치 부착사실이 없이 정상가동 중인 자동차
- 접수기간 : 2.7~2.8(시청1층 대회의실), 2.11~2.13(시청3층 청백실)

주요내용

-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% 지원

구분		상한액 (만원)	지원율	
			기본	추가
총중량 3.5톤 미만		165	100%	-
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40	100%	200% (신차구매시)
	3,500cc 초과~5,500cc 이하	750		
	5,500cc 초과~7,500cc 이하	1,100		
	7,500cc 초과	3,000		
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스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		3,000		

※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**추가 400만원** 지급

- 지원절차

사업시행 공고	▶	보조금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제출	▶	보조금 지급 확인서 교부	▶	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	▶	보조금 지급
부산시		소유자→부산시		부산시→소유자		소유자→부산시		부산시→소유자

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홍보

자료제공 :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☎ 051-888-3554

참고

조기폐차 후 LPG 1톤트럭 신차 구매시 구입비 지원

노후된 경유 화물트럭을 조기폐차 하고 LPG 1톤 트럭 신차를 구입하면 **추가 400만원**을 지원합니다.

새롭게 시작합니다

- ❖ 생계형 소형화물차는 주로 도심·주거지 등 인구 밀집지역의 운행이 많아 저공해조치가 시급
 - 영세 소상공인·저소득층·사회복지 시설 등은 차량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신차 교체의 부담이 매우 커 조기 폐차하지 못하고 있어, 조기 폐차한 후 LPG 트럭으로 교체시 신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, LPG 차량으로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함.

기대효과

- LPG 트럭으로 교체시 신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- LPG 차량으로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

관련근거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)

알려드립니다

- ❖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: 2019.2.7.~12.31.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됨)
- ❖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: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 시 **다음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**
 - ※ 1 순위 :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
 - 2 순위 :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 가구, 다문화 가구
 - 3 순위 : 기타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 - 4 순위 : 사회복지시설, 소상공인 등
- ❖ 신청서류 :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,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(사업자 등록증), 대상자 증빙 서류 등
- ❖ 접 수 처 :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22층 ☎ 051-888-3552